

##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후원이사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회는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후원이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이사회는 개혁주의학술원 후원회의 최고의결기구로써 한국개혁주의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후원과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사의 자격) 이사는 학술원을 제정으로 후원하는 후원자와 후원기관의 대표자로 한다.

제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회 가운데 10명 이내의 상임이사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총무이사 1명, 부총무이사 1명, 서기이사 1명, 회계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하고 학술원장과 책임학술위원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제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후원하는 동안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모든 후원이사들을 대표하며 학술원을 위한 재정지원 기능과 1년 1회 후원이사 초청을 위한 소집 기능을 가진다.

제7조(이사회 책무) 개혁주의학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효과적인 재정후원 방법을 모색한다.

제9조(이사의 자격상실) 학술원에 재정 후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이사회 소집) 정기 이사회는 1년 1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학술원장의 요청으로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상임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술원장이 임명하고 이사장 이외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학술원장이 임명한다.

###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학술원장의 발의로 상임이사 재적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